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 25 통권 160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 조세 재정 고용 분야

<b>기획재정부</b>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li> <li>•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li> <li>•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li> <li>•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li> <li>•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li> <li>•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li> <li>•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li> <li>•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li> <li>•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li> <li>•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li> <li>•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li> <li>•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li> </ul>	
<b>금융위원회</b> .....	33
<b>관세청</b> .....	38
<b>고용노동부</b> .....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당 9620원으로)</li> </ul>	
<b>산업통상자원부</b> .....	46
<b>중소벤처기업부</b> .....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li> </ul>	
<b>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b>	48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3  
년  
1  
월  
25  
일  
(수)  
·  
주  
간  
제  
4  
호  
·  
통  
권  
제  
1  
6  
0  
7  
호  
·  
2  
0  
2  
3  
이  
런  
게  
달  
라  
집  
니  
다  
구  
독  
보  
출  
3  
0  
0  
0  
0  
원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금융 · 조세 · 재정 · 고용 부문

- 기획재정부, 2023. 1

-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 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제·금융>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3.1.1~)
  -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23.1.1~)
  - \*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그 외 6억원 → 9억원
-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22.12.1~)
  -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 <교육·보육·가족>

-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23년 중)
  - \* 4개 교육청(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만명, '23.1.1~)
  - \* (현재)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변경) 60% 이하
-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23.1.1~)
  - \* (지원시간/대상가구) '22년 연 840시간/7.5만 가구 → '23년 연 960시간/8.5만 가구

###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23년 상반기~)
  - \* 최대 154만원 → 162만원(4인가구) \*\* 3.5만 가구(생계), 1.3만 가구(의료) 추가 수급 예상
-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23.1.1~)
  -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지급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 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 '23.1.1~)
  - \* '22년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23년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23.1.1~)

### <문화·체육·관광>

-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23.3.28~)

### <환경·기상>

-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23.1.1~)
  - \* 노후경유차에 대해 잔존가격의 100% 지원
-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23.2.1~)
  - \* (직접 충격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 주간 39dB, 야간 34dB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 시행('23.3.7~)

<농림·수산·식품>

-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23년 상반기~)
  - \* (사업 선정규모) 2천명 → 4천명,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 110만원
-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23.4.19~)
  - \*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최대 약 56만명 추가 수령 가능
-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락작물직불제 시행('23.1월~)
  - \* 단일재배 : (동계) ha당 50만원,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
  - 이모작 : 밀·조사료 + 콩·가루쌀 250만원
-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23~'27년)
  - \* '23년도에는 경제거점 5개소, 생활서비스 35개소, 안전인프라 20개소 선정·시행

<국방·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 인상\*\*('23.1.1~)
  - \* 병장 기준 '22년 월 67.6만원 → '23년 월 100만원 \*\* '22년 6.2만원 → '23년 8.2만원
- 사회복지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 확대('23.1월~)

<행정·안전·질서>

-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 제화('22.12.13~)
  - \*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23.6.28~)
-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
  -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신설('23.1.1/1.22~)
  - \*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 1월 5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획재정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현행	개정안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현행	개정안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현행	개정안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현행	개정안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 시행일 :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퇴직자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 (적용대상 소득)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 지분을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 배당

-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외

■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의 95%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대상 채권) 국채(국채법 §5①), 통화안정증권

■ (투자 방법) 직접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 적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추진배경 : 국제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제 투자 유도
- 주요내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과세제외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합니다.
-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증여이익계산 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 시행일 :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완화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재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합니다.
-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0.5조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
  -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및 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6 %	3.6%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2.0%	4.0%
94억원 초과	3.0%	6.0%	2.7%	5.0%
법인	3.0%	6.0%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추진배경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주요내용
  -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율 조정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 인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투자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현 행		개 정																																							
<p>■ 통합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분 기본공제(㉑)</li> <li>+ 투자증가분 추가공제(㉒)</li> <li>- (기본공제(㉑))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공제액(%)</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3</td> <td>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공제(㉒))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li> <li>*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li> <li>국가전략기술 : 4%</li> </ul> <p>■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p>		구분	공제액(%)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p>■ 공제율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기본공제율 상향</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공제액(%)</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5</td> <td>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8</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구분	공제액(%)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구분	공제액(%)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구분	공제액(%)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현 행					개 정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 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2년)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 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2년)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2년)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2년)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1,55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 청년 범위: 15~34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액 (단위: 만원)</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td> <td>1,300</td> <td>9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두 차례까지 가능해집니다.

- 2023년 이후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를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특허 기간은 회당 5년 이내로써 최대 10년입니다.
- 따라서,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 갱실히수 확대

-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두 차례까지 허용(회당 5년)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황

현행		개정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좌 동)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 20만원)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 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까지 상향합니다.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추진배경 :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 주요내용 :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원 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 추진배경 : 교육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현 행>					<개 정>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초과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총급여 ×20%, 300만원)	250	200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100	-	-		도서공연 등			-	

■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현 행>		<개 정>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상향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 공제(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공제한도 단순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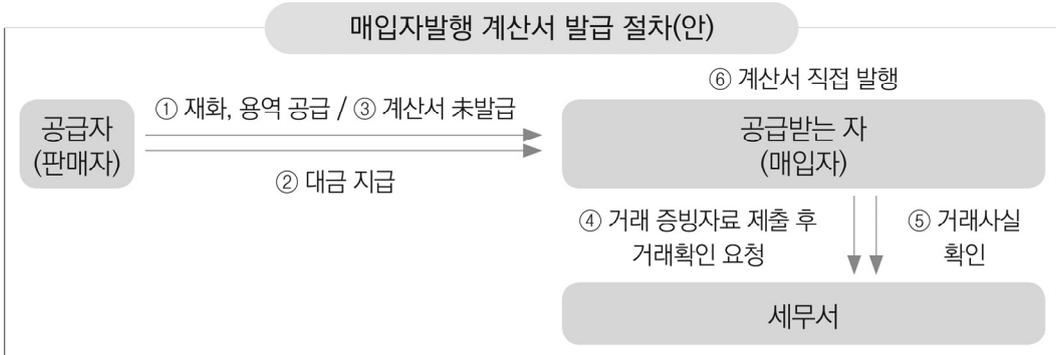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특례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20년간) 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 \*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50%)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 주요내용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5→10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 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 \*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벤처기업 인재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누적한도 5억원)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도 적용
    - \* 종전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허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 추진배경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추진배경 :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고,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습니다.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 추진배경 : 기부자의 납세 이해도 및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600억원\*
    -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본공제 확대) 5억원 → 10억원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 \text{ 상속세 납부액} \times \frac{\text{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text{365}} \times \frac{\text{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text{365}}$$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대상기업) 중소기업
  - (적용방식)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
- 주요내용 :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정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 대여용역 뿐만 아니라, 만화방(만화카페) 내에서의 시간제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추진배경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 주요내용 : 만화방, 만화카페 등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결정·경정 등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인지세 납세 편의 등을 감안하여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 추진배경 :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차종별로 100~400만원)\*됩니다.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2.12.31. → '24.12.31.)
  -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시행일 : 2022년 12월 31일

###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추진배경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세금을 신고납부한 자는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현재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
-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하므로, 동의없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시행령 규정 사항)

-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개시일 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경매·공매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 추진배경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해당 세금의 배분예정액은 임차보증금이 대신 변제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 주요내용 :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10% 감면)는 폐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 주요내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등의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34세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혜택이 상향됩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됩니다.

■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 추진배경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포함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영화'에 더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공제대상에 추가됩니다.
-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 주요내용 :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추가
  -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 추진배경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
- 주요내용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금융위원회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추진배경 :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애로가 발생, 금리인상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필요
- 주요내용 :
  -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로 상향 단일화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대출한도 4억→6억, LTV 70%허용)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집니다.



- 종전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 추진배경 : 금융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 시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여 편의성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등 이행사항을 확인해줄 수 있음
- 시행일 : 2022년 12월 8일

###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권유 및 계약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외화'로 설정된 보험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화보험 판매시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 추진배경 :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주요내용 :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12월 8일

##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도약계좌 출시

- 추진배경 : 코로나 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추진
- 주요내용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시행일 : 2023년 6월 출시(잠정)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이 마련시행됩니다.

\* '21년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141개사) 및 선불업자(73개사)가 적용대상이며,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대상



-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 8월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

- 추진배경 : 결제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
- 주요내용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산정원칙)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 ①결제수수료와
    - ②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하여 수취관리토록 규정
  - (공시) 공 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되어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금융혁신 가

속화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참여한 상생·협력의 논의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
  -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인보험 외 주택화재 등 물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를 추가 제공
  -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되고,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확대

○ 시행일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22년 10월

정보확대 :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23년 상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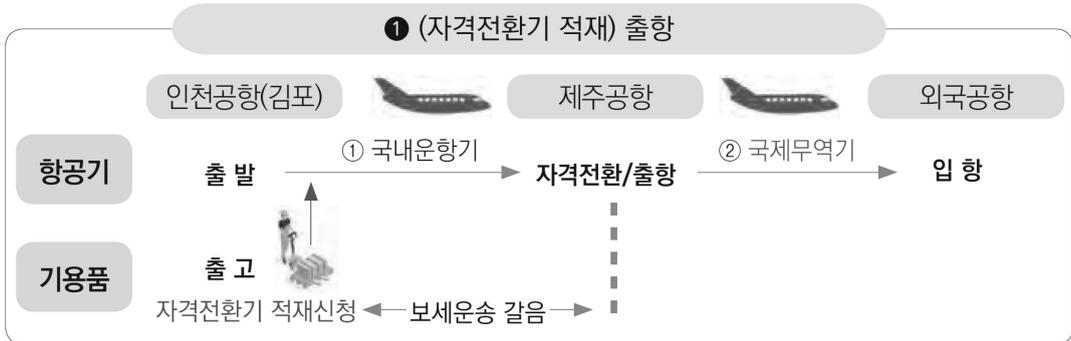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예정인 국내운항기에 적재하거나, 국제무역기에서 자격전환한 국내운항기에 하기하는 제도(이하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 현재는 일부 대형항공사를 제외하고 지방 국제공항별로 자사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또는 기내식 보세공장이 없는 항공사가 다수여서 지방공항으로 외국항공기용품(기내 서비스물품, 기내 판매물품, 기내식 등) 보세운송 및 지방공항에서 적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① 해당 지방 노선 운항 포기, ② 기내판매물품 매출 포기, ③ 기내 서비스 저하, ④ 여행자 불만 증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신청으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하고 국내운항기를 보세운송 항공기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구인난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
  - (기업)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 (구직자) Jobcare를 활용한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 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 \* '22년 기업 9개, 구직자 6개 고용센터 → '23년 하반기, 48개 관서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확대

- 추진배경 :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초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추진배경 :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 주요내용 :
  - (규제개선)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 (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시행일 : 2023년 1월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추진배경 :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을 선호, 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 주요내용 :
  - (규제개선) 사 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여도 훈련비 지원(<기존> 과정별 이수 필요 → <변경> 과정별 이수하지 않아도 훈련시간 충족 시 지원)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 주요내용 :
  - (규제개선) 기 업이 위탁훈련 시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자부담금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 시행일 : 2023년 1월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추진배경 :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주요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를 배치하여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달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23년 1월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 신규 지원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

- 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참고 : 중소건설현장(1~50억)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단위: 명) >

전체	12대 위험요인	① 단부/개구부	② 철골	③ 지붕	④ 비계/작업발판	⑤ 굴착기
566	344	51	48	40	39	28
100%	60.8%	9.0%	8.5%	7.1%	6.9%	4.9%
⑥ 고소작업대	⑦ 사다리	⑧ 달비계	⑨ 트럭	⑩ 이동식비계	⑪ 거푸집/동바리	⑫ 이동식크레인
28	22	21	19	18	17	13
4.9%	3.9%	3.7%	3.4%	3.2%	3.0%	2.3%

##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시행

- 추진배경 :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 주요내용 :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

구분	1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7.1.	'21.7.1.	'22.7.1.	'23.7.1.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 산업통상자원부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됩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인니 CEPA는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FTA\*로, 동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미양허되었던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 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한-캄보디아 FTA: '22. 12월 발효

■ 이를 통해 인니 수출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감축 혜택 확대는 물론, 그간 미개방되었던 인니 온라인게임 및 문화컨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 한-인니 CEPA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아세안 최대시장 인니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아세안지역 FTA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 (상품)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
  - (서비스·투자) 양국은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
  - (협력)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중소벤처기업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14('22.8.23. 개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 확대지원 개시일 : 2023년 1월 1일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3.4.19. 시행)

-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법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 법률 일부개정

- 추진배경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애로사항인 법률비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 신고를 전자문서로 확대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분쟁 정책보험 지원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
-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3일(금)	1월 16일(월)	1월 17일(화)	1월 18일(수)
미 달 러 (USD)	1244.60	1240.60	1234.00	1238.50
일 본 엔 (JPY)	962.46	969.86	961.92	965.69
영 국 파 운 드 (GBP)	1520.53	1516.70	1505.60	1521.62
캐 나 다 달 러 (CAD)	930.92	926.06	920.55	924.87
홍 콩 달 러 (HKD)	159.39	158.86	157.99	158.44
위 안 화 (CNH)	183.83	184.45	183.87	182.95
유 로 화 (EUR)	1350.45	1343.45	1336.18	1336.47
호 주 달 러 (AUD)	867.24	865.01	858.62	865.46
싱 가 폴 달 러 (SGD)	940.92	940.10	934.18	938.0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5.52	286.12	285.91	286.26